

2020년 제5회 건축 소위원회 서면심의 주요결과

[1호 안건: 가좌동 291-7번지 외 3필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서구청	심의일자	2020. 05. 26.		
건축종별	[O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○○○모터스(주)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				
	지 번	291-7	관련지번	291-8, 291-33, 291-34	
	대지면적	1,426.6 m ²	용도지역(지구, 구역)	일반공업지역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715.11 m ²	건폐율	50.13 %	
	주 용 도	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	구 조	일반철골구조	
	최고높이	8.95 m	용적률	68.43 %	
			층수 지하: 0층 / 지상: 2층	건축물 동수	2동
			연면적 합계	976.29 m ²	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구 조)분야	○ 구조심의도서 중 설계설명서(P.35 ~ P.39)에 표현된 골조도면 및 모델링 Frame이 변경 전 상태이므로, 변경 후 Frame으로 변경하여 반영 요함			
	(공 통)분야	○ 사전검토 의견의 조치계획 및 건축 소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건축 인·허가(사업계획 승인, 착공신고 등) 시 반영할 것			
심의결과	<input type="checkbox"/> 원안 의결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조건부 의결 <input type="checkbox"/> 재검토 의결 <input type="checkbox"/>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

2020년 제5회 건축 소위원회 서면심의 주요결과

[2호 안건: 원당동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지구 C6-1-1 근린생활시설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서구청	심의일자	2020. 05. 26.	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○○개발주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지구				
	지 번	C6-1-1	관련지번		
	대지면적	798 m ²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일반상업지역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543.32 m ²	건폐율	67.4 %	
	주 용 도	근린생활시설	구 조	철근콘크리트구조	
	최고높이	35.55 m	용적률	498.68 %	
			층수 지하: 3층 / 지상: 8층	건축물 동수	1동
			연면적 합계	5,911.1 m ²	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경관계획)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8층 void 부분의 정면부 기둥과 보 삭제로 상층부 개방감 확보 ○ 수평선과 수직선의 볼륨감을 변경하였으나, 수직선 부분만 강조되어 보임. 정면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'ㄹ' 자 패턴이 보이나 측면부는 부조화스러움 ○ 입면 패턴 재조정 검토 			
	(주차계획)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하층 경사로 끝 지점의 평행주차 구획(P1)은 차량 진출입시 및 주차 시 교통 통행에 방해되므로 직각주차로 변경 ○ 지하층 램프구간의 주차동선을 간결하게 할 것(차로부분의 굴절 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, X1열 주차배치를 조정하거나 경사로 끝단을 조정 검토) ○ 지하3층 회차공간 부족 			
	(기 타)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L-017의 옥외광고물계획 중 지주이용광고물은 업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간판 교체 방법에 대해 검토 요함 			
	(공 통)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전검토 의견의 조치계획 및 건축 소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건축 인·허가(사업계획 승인, 착공신고 등) 시 반영할 것 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				
	<p>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 				